

# 대학평의회 규정(4-4-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31조의 6 의거 설치되는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의회 구성) 평의회는 정관 31조의 2에 의거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기타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자 2명

제3조(평의원 추천 및 위촉) ① 교원은 단과대학별로 각 1인을 추천한다.(개정 2014.11.20)

② 직원은 노사협의회에서 일반직원, 팀장급 이상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개정 2008.4.23)

③ 학생대표는 총학생회장이 2인을 추천한다. 총학생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2인을 추천한다.

④ 동문은 동문회장이 2인을 추천한다.

⑤ 기타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자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⑥ 각 구성단위별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의원수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⑥ 평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5조(평의회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소집) 평의회 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한다. 다만, 평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4.2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대학평의원회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2(개방이사추천위원회) (본조 신설 2008.4.23)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21조의 4에 이거 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건양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법인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한다.(개정 2018.02.12.)

② 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한다.(개정 2014.11.20.,2018.02.12.,2018.03.21.)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14.11.20)

④ 추천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이사는 2배수, 감사는 단수로 추천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 하여야 하며, 추천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한다.(개정 2018.03.21.)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비밀유지 및 공개 관련 사항은 본 규정 제11조(비밀유지), 제12조(공개)를 준용한다.(신설 2018.03.21.)

제9조(회의록 작성)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의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① 대학평의원회의 일시, 장소, 안전에 대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사전에 공개한다. 단, 긴급한 안전 등이 발생하여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공개하기 어려운 기밀 사항이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범위를 해당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추천서 (교직원용)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31조의 3,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위 사람을 대학평의위원회 의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

추 천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건양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 대학평의원회 의원 추천서 (학생용)

학 과	학번	학년	성명	추천사유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31조의 3,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위 사람을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

추 천 인

건양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인)

- 붙임 :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건양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3>

## 대학평의원회 의원 추천서 (동문용)

출신학과	학번	졸업년도	성명	추천사유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31조의 3,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위 사람을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

추천인

건양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인)

- 붙임 : 1. 졸업증명서 1부.  
2. 이력서(경력위주) 1부.

건양대학교 총장 귀하